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1. 내부감시장치의 개요

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내부감시장치와 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사회 : 공사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 (2) 감사 :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합니다.
- (3) 내부 감사부서 : 감사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는 2016. 12. 31. 현재 상임이사 3명(사장 포함)과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감사의 임면과 내부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상 신분보장

(1) 감사의 임면

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2) 내부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상 신분 보장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의견을 들어 행하고, 법령 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내부감시장치의 운영

가. 내부감사의 운영실적

내부 감사부서는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監査)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사(監事)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2016년도 중 종합감사 2회, 특정감사 4회, 일상감사 1,246건을 실시하였고, 총 151건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 또는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경영진 및 관련 부서장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회계연도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감시 장치는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7년 2월 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 김 현 식

